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 확대〉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4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 확대	2
※ 참고자료	6
1. 2024년도 기상청 소관 연구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6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1일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 확대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출연금 외에 보조금, 융자금을 추가함으로써 보조금이나 융자금으로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생략)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u>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u>출연금</u> 의 지급·사용 및 <u>관리</u>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출연금·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u> -----. ③ ----- ----- <u>출연금·보조금</u> ----- <u>관리, 융자의 대상·기준·상환 등</u> -----.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¹⁾, 기상청은 2024년의 경우 총 9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²⁾.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2024년 예산은 2023년 예산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한 상황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1) 법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참고자료 1. 2024년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	'21	'22	'23	'24
정부 출연금	기상청	32,757	26,329	25,764	26,778	19,202
	그 외	-	-	-	-	-
	계	-	-	-	-	-
정부 외 출연금		-	-	-	-	-

※ 출처: 기상청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을 현행 출연금 외에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융자 방식의 경우 기업에 지원했던 자금 회수가 가능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조 방식의 경우 민간이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출연 방식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투·융자 연계 방식으로 다양화하도록 제시한 바 있는데,³⁾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융자 방식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짐.

다만, 202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 소위에 회부되어 계류중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안)은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

3)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 2024.5, p327

용4)하기 위하여 현행 제9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이를 동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이를 규정하여 준용하도록 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5).

참고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사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융용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6)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 및 운용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42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및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5)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2202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참고자료

1. 2024년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⁷⁾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과제수	예산액
1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3	600
2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7	2,940
3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5	410
4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11	744
5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Ⅱ)	5	3,070
6	지진·지진해일·화산감시 응용기술 개발	2	300
7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21	4,750
8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5	3,600
9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1	2,788
계		60	19,202

※ 출처: 기상청

7)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기준